

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임원(비상임이사) 모집 재공고

(재)춘천지혜의숲 비상임 이사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1. 임용직위 및 인원: 비상임 이사 1명
2. 채용조건 및 보수
 - 가. 응모조건: 선임일로부터 2026년 11월 29일 까지(연임 가능)
 - 나. 보수조건: 무보수
3. 응모자격: <별표1> 참조
4. 결격사유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정관)
 - 가. 미성년자
 -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다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라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선임방법 : 서류 및 면접심사(생략할 수 있음)
6. 응모원서 교부 및 접수
 - 가. 원서교부: 춘천지혜의숲 홈페이지(<https://www.cc5070.or.kr>) 다운로드
 - 나. 공고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5.(수)

다. 접수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5.(수) 14:00까지

- 단 토요일,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

라. 접수방법: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/ (재)춘천지혜의숲(3층)

7. 발표 일시·장소: 개별통지

8. 제출서류

① 응모원서 1부 (서식1호)

② 이력서 1부 (서식2호)

③ 자기소개서(경력 및 업적 중심, A4 2매 이내) 1부 (서식3호)

④ 직무수행계획서(비전 제시 및 경영구상 중심, A4 3매 이내) 1부 (서식4호)

-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비전 제시, 기관운영 방침, 경영목표를 자유롭게 기술

- 면접전형(일시·장소 개별통보) 시, 기제출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요약하여 발표(5분)

⑤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 1부 (서식5호)

⑥ 기본증명서 1부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발행)

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

(단, 외국 학위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등록필증 사본첨부)

⑧ 경력증명서(관련기관 등 근무경력 증명용) 각 1부

⑨ 학위논문(석사, 박사) 요약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※ 제출서류는 가급적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, 사진은 동일원판 사용

9. 심사방법 및 적격자 발표 ※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으로 면접심사 생략할 수 있음

① 심사방법: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
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

② 발표: 단계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
10. 유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② 경력,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임원추천위원회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, 임명권자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④ 심사결과는 전화로 통지 합니다.
- ⑤ 기타사항은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(☎ 070-4234-0845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2024. 9. 12.

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<별표 1> 임원 후보자 자격기준

임원후보자 자격기준

구 분	비 상 임
포괄적 자격 요건	○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○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○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○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
필수 요건	○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－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－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－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－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구체적 자격 요건	○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
	○ 관련 단체 또는 기업의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
	○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5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
	○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·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
	○ 관련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	○ 기타 상기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
※ ‘관련 분야’는 복지, 경영, 행정, 교육, 법률,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